


보도자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5.7.(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02-2100-2660)	담 당 자	민 인 영 사무관 (02-2100-2661)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6700)		황 선 오 팀 장 (02-3145-6710)

제 목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①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클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 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 * 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② (신규진입 활성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③ (규제 완화)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④ (투자자 보호)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1.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
 - * 예외 :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업력과 무관
- (개정)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 *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 유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8.4.2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

②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 (현행)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중기부 등록)
 -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운영하는 사모펀드로서 세제혜택 제공 ('18년말 기준 35개)
- (개정)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의 설립을 허용
 - * 창업·벤처 전문 PEF와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간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상이한 만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이 크라우드펀딩 前·後 모두 금지
- (개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으므로 발행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 허용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중개과정에서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기업에 보다 적합한 자문 제공 가능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

- (현행)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 적용
- (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
 - i)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어 직무수행을 통한 미공개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
 - ii)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 (금산법 제24조~제24조의3 적용 배제)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업무가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어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제 적용은 과도
 - ※ 유사한 내용의 자번시장법 개정안('18.4.2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및 금산법 개정안('19.1.7,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
 - iii)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보관이 금지되어 부도시에도 투자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 (현행)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 (개정)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 필요
- (개정)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
 - * 운용인력(2명 이상), 내부통제기준 구비 요건은 지속 심사

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⑦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 (현행) 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 (개정)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 대통령령에서 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을 규정할 예정

8]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 (현행) 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자는 스팸처럼 인식

* 펀드의 자산·부채, 운용성과, 투자대상자산, 투자운용인력 등 펀드재산의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 (개정)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

*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연 2회 제공

9]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 (현행)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예외없이 매분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자산, 평가손익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펀드) 등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교부 의무 면제

- (개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 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 대통령령에서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또는 잔고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할 예정

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 (현행)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 (개정)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현행)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 보상체계 등 추가

11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 (현행)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사항
- (개정)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
 -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